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1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조지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6. 8.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u>

	<u>스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와</u> <u>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u> <u>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u>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후, 2025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음.¹⁾
- 2026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예산은 83억 3,400만원이며, 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통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2개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²⁾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으로 운영되며,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을 이용할 수 있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긴급돌봄센터 내 최중증 UNIT을 구성하여 1회 입소 시 1~5일, 연 최대 30일 이용할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

2) 동 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임.

수 있도록 하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보다 제공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개요 >

2026.6.기준

구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 용형 등(전국 34개소)	• 기존 긴급돌봄센터 내 최 중증 UNIT 구성(전국 2개 소)
이용기간/이용료	•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 1일 3만원 부 담(이용료+식비)	• 1회 입소 시 1~5일, 연 최대 30일, 1일 3만원 부 담(이용료+식비)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 원 등
제공인력	•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 명 등 총 11명	• 센터장 1명, 전담인력 1 명, 돌봄인력 13명 등 총 15명
이용정원	• 남·여 1개소 각 4명	• 개소당 3명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개정안은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
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안
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보호자의 질병·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단기간의 돌봄 공백도 당사자의 생활 유지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신규 설치형 외에도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³⁾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설치·운영 근거만 둘 경우, 기존 시설을 긴급돌봄센터로 지정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불명확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사업 운영 방식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정·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그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현행법 제41조⁴⁾에 위탁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법 시행 당시 긴급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기관의 법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함께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16호)이 계류 중이므로,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긴급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긴급돌봄센터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도 긴급돌봄센터로 운영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탁 대상을 법인·단체와 그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수행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을 통한 서비스 제공
공백 방지를 위해 법 시행 당시 기존 수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